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체적 제한으로서 강박 금지 등〉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4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신체적 제한으로서 강박 금지 등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2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7.
-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는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 심의에서 정신병원 내의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II. 검토의견

1. 신체적 제한으로서 강박 금지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신체적 제한인 강박과 격리 중에서 묶는 행위인 강박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격리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현행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 ③ (생략)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한 경우
<u><신설></u>	7.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한 경우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	제30조(기록보존) ① -----

시설의 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 · 10. (생 략)

② ~ ④ (생략)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illegible]

1. ~ 7. (현행과 같음)

8.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격리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

격리
키거나 -----

. 다만,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
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다.

② -----

격리시키는-----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u>제1항에</u>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u>해당</u>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 ----- ----- ----- -----<u>제1항 단서에</u>----- ----- ----<u>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u> <u>에 따라 해당</u>----- --.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84조(벌칙)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한 자</u> 14. <u>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격리한 자</u>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10. <u>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u> 11. (생략)	제86조(벌칙) ----- ----- ----- -----.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현행과 같음)

□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강박에 대한 지침이 잘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강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권고¹⁾한 바 있음.

□ 개정안은 격리와 강박, 두 종류의 신체적 제한이 신체적 억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격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²⁾.

□ 다만, 최근 보도³⁾에 따르면 강박에서 풀려난 정신질환자가 낙상사고로 인하여 전신마비가 된 사건이 있었던바, 강박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부터 또는 자해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으며, 같은 공간에 머무르

1) “정신의료기관의 병실 내 강박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4. 7. 30.)이며, 그 내용은 2023년 12월 29일 어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진정인이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강박되어 장시간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묶여 있었다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시행된 강박으로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것임.

2) 개정안을 현행법과 비교하면, 격리에 대하여는 원칙과 예외라는 상황을 명백히 하였고, 강박은 예외 없이 금지되도록 입법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3) ‘정신병원서 강박 풀자 ‘광’...7분 방치된 환자 사지마비’ 출처 : SBS 뉴스 (2024.8.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8278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82786&plink=ORI&cooper=NAVER

는 다른 정신질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향한 타해의 위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는 존엄에 기반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을 줄이는 추세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으로 법제화할 것,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격리(강박)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 도구를 표준화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책권고한 바 있음⁴⁾.

□ 한편 현행보다 강화되는 벌칙 조항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정은 신체적 제한 금지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84조의 각호의 하나로서 강화시키려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개정안 제84조제13호의 신설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묶는 조치를 하거나,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 없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시키는 법 위반 사항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상황이 급박하여 미처 전문의의 지시 없이 한 신체적 조치 행위도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등은 동일한 형량의 제84조의 다른 각호의 사항들⁵⁾과 비난가능성 또는 책임성이 유사한 수준인

4) “정신의료기관의 병실 내 강박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4. 7. 30.)에서 인용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 및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이 유사한 범죄와 처벌 수준⁶⁾이 대등한 수준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 둘째, 개정안 제84조제14호는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격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75조제2항의 단서⁷⁾는 격리의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벌칙으로 규제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는 측면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제1항제1호(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7. 제66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
 9.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1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 6) 「형법」에서 규정하는 감금이 현행법의 신체적 제한과 가장 유사한 구성요건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5).’로 설명하고 있음.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 개정안 제75조제2항의 단서는 ‘이 경우 격리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임.

□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상황에서 환자 본인과 의료진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강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강박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면 의료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 기피 현상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의사협회	○신체적 제한 행위는 다양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정과 회복을 돕고,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및 주변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적 조치 중의 하나임. ○정신질환자에게 묶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의료진이 다른 조치를 위하여 과다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게 되면, 오히려 각종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음. ○어떤 의료적 조치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협소해지면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면,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

문 의 처

02)6788-5498